

- 비고 : 1. 가정용추가 및 사업장용봉투는 각각 “가정용추가”, “사업장용”으로 표시하고, 10ℓ · 50ℓ · 100ℓ 용은 위 예시에 따른다.
2. 실제 사용할 쓰레기 봉투제작시에는 봉투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

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역은 해당 구표시만 하고, 대행지역은 구와 업체명을 함께 표시하며 여분부분의 표시는 짙은선으로 한다.

(별표 3)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시(제21조제3항 관련)



- 비고 : 1. 표지판의 크기는 담배판매소 표지판의 크기로 한다.
2.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점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3. 글씨체는 전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4.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137) · 녹색(DIC: 92) 2도로 표현하거나 청색(DIC: 579) · 녹색(DIC: 643) · 검정색 · 흰색 ·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 4. 9.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4. 4. 9.  
 다. 상정일자 : 제2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1994. 4. 11)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시민국장 강신재)

- 가. 제출이유  
 지방재정시행령 제156조 개정에 따라 기금담당공무원 관직명칭이 변경되어 동 조례중 기금회계적 공무원의 해당조항을 개정,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기금

## 담당공무원의 명칭변경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건재)

가. 동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4조제1항 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각각 개정하려는 것으로,  
 나.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1993. 9. 23 대통령령 제13981호) 제156조가 개정되어 기금담당공무원 관직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동조례의 관련조항을 상위법과 일치시켜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개정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8. 기타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  
기금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0
----------	-----

제출년월일 : 1994년 4월 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 개정에 따라  
기금담당공무원 관직명칭이 변경되어 동조

례증 기금회계적 공무원의 해당조항을 개정,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임.

## 2. 주요골자

-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기금담당공무원의 명칭변경(안, 제4조 제1항, 제2항)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 5.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1994. 3. 26. 법률 제4741호) 제133조 제2항
- 지방재정법(1991. 12. 31. 법률 제4466호) 제110호 제1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1993. 9. 23 대통령령 제13981호) 제156조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  
기금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  
금출납원”으로 각각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4조(기금회계적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u>기금출납명령관</u> 및 <u>기금출납공무원</u>을 임명하여야 한다.</p> <p>② 기금의 회계적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u>기금출납명령관</u>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u>기금출납공무원</u>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p>	<p>제4조(기금회계적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u>기금운용관</u> 및 <u>기금출납원</u>을 임명하여야 한다.</p> <p>② 기금의 회계적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u>기금운용관</u>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u>기금출납원</u>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p>

<p>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p> <p>심사 보고서</p> <p>1994. 4. 12</p> <p>도시건설위원회</p> <p>1. 심사경과</p> <p>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 3. 3. 마포구청장 제출</p> <p>나. 회부일자 : 1994. 3. 4</p> <p>다. 상정일자 : 제2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94. 4. 12.) 상정, 의결</p> <p>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비국장 이상하)</p> <p>가. 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3. 8. 9. 건축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953호)의 개정에 따른 불일치되는 조문을 상위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될 사항중 누락된 사항의 보완 및 일부 규정을 완화하므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함.</li> </ul> <p>나. 주요골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시행령(별표1) 건축물의 용도분류 조정에 따른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용도제한 규정 정비(안 제21조, 제36조)</li> <li>○ 용도지구내 풍치지구 및 미관지구안의 단서규정 삭제(안 제22조, 제23조, 제29조, 제30조)</li> <li>○ 자동차 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15미터 미만도로에 면한 아파트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완화(안 제17조, 제42조, 제43조)</li> <li>○ 건축위원회 기능 추가(안 제5조)</li> </ul> <p>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 관수)</p> <p>시대적 요청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불합리 하였던 제규정을 정비하여 마포구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적합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동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건축위원회의 기능은 일부 추가 강화된 부분도 있으나 이는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건축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의 일환임은 물론 이웃</p>	
---	--